

2025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

[지역 수요기반 드론 활용 사업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]

도내 첨단 드론기술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·군 공모 방식으로 지역 수요기반 드론활용 사업모델 발굴 및 실증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7일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
 - 세부사업명 : 지역 수요기반 드론 활용 사업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
- 주최/주관 : 경기도/(재)경기테크노파크
- 사업기간 : 2025. 3. ~ 12.
- 사업목적 : 드론을 활용한 공공부문 도민 체감형 활용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으로 드론기술의 상용화 촉진

II 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5년 3월 27일(목) ~ 4월 28일(월)
- 추진방식 : 경기도내 31개 시·군 공모 사업
- 지원대상 : ‘기초지자체’ 및 ‘참여기업*’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 - * 본사, 지점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있는 드론 중소중견기업
 - * 2025년에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
- 지원내용 : 지역수요 기반 드론활용 모델 발굴 및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
- 지원규모 : 1개 컨소시엄 내외, 2억원 이내/컨소시엄당
 - * 경기도 지원금의 30%이상 기초지자체 현금 부담 필수
- 수행기간 : 협약일로부터 11월 21일까지

□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역
드론활용 사업모델 발굴 및 실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현안 해결 및 산업 특성 등이 반영된 지역 수요기반의 드론활용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- 인건비, 재료비, 외주제작비, 시험분석·인증비, 활동비(국내여비, 수수료(회계정산, 드론보험료 등), 전문가활용비, 홍보비 지원 ※ 레저, 배송 분야 제외
지원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개 컨소시엄 내외, 도비 200,000천원 이내 지원
시·군 매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 지원금의 30%이상 현금 매칭

□ 사업신청 방법 및 역할

- 컨소시엄 구성 : 기초지자체를 대표사업자로 하여 도내 드론 관련 중소·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
- 참여기업 구성 및 예산배분 : 참여기업은 최대 2개사까지 구성 가능하고, 주관 참여기업 및 공동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주관 참여기업에 50% 이상의 사업 예산 배분 필수
- 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
 - 대표사업자인 기초지자체가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·신청
 - 사업관련 평가·점검 등의 절차는 기초지자체의 주도하에 수행
- 주체별 주요역할

주요 역할	
< 기초지자체 >	< 참여기업 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계획 수립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과제신청 과제추진 및 실증을 위한 관련 행정지원 및 관계기관 조율 예산 매칭 및 지원금 교부(기초지자체→참여기업) 공역, 인프라 등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드론법, 항공안전법, 전파법 등 관련 법률의 제반사항 준수한 총괄 사업관리 과제 추진에 대한 점검, 평가, 요청사항에 따른 행정대응 등 실증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사업종료 후 실증 활용현황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 추진계획 수립, 컨소시엄 구성 참여 지역 수요기반 과제 계획 수립 및 상용화 달성을 위한 실증 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참여인력 관리 및 성실사업 수행 과제 추진(안전관리 포함) 및 사업비 관리 드론법, 항공안전법, 전파법 등 관련 법률의 제반사항 준수한 사업추진 과제 추진에 대한 점검, 평가, 요청사항에 따른 행정대응 등 실증성과 홍보, 성과물 전시 및 시연 사업종료 후 상용화 성과 제출

□ 평가 및 선정 기준

- 평가방법 : 대면(발표)평가 * 컨소시엄별 30분(발표 20분+질의응답 10분)
- 평가일정 : 5월 둘째주 예정 * 참여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후 평가 진행
- 평가기준 :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(20), 실증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(30), 사업추진능력(25), 상용화 계획의 적정성(25)로 구성

평가항목	평가내용
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(20)	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산업적,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제의 적정성
	실증 특성에 부합한 드론 기술에 대한 진행단계별(초·중·말) 명확한 성과 목표 제시
실증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(30)	목표달성을 위한 실증 지역 선정 및 실증, 목표 달성 계획
	드론활용 기술 적용 및 상용화를 위한 추진계획 적정성
사업추진능력(25)	성공적 과제추진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의지 및 추진전략
	참여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추진, 안전관리 이행 계획의 적정성
상용화 계획의 적정성(25)	기초지자체의 드론 서비스 적용 및 지원 계획
	드론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·상용화 계획 적정성

- 선정기준 : 평가위원회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컨소시엄 중,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하고, 추후 협약 포기 및 잔여예산 발생 시 차순위 컨소시엄 선정

* 동점자 발생 시 상용화 계획의 적정성, 실증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,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, 사업추진 능력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

○ 지원방법

-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이후 다자간(주관기관-기초지자체-참여기업) 협약 체결
- 경기도 지원금의 30%이상 기초지자체 현금 부담 필수로 기초지자체 부담금 납부 약속서(제출서류-붙임12) 제출 필요
- 협약관련 요구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금 선지급 예정

※ **재원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**

- 보험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, 발행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
- 경기도 지원금 및 기초지자체 매칭비 규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 각각 발급 필요

※ 「2025년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」 전용 계좌로 관리

- 신규 계좌 발급 또는 잔액이 0원인 기존 사용 계좌
- 경기도 지원금 및 기초지자체 매칭비를 1개의 전용 계좌에 관리
- 기업 경비 및 타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계좌와 혼용 사용 등 절대 불가하고, 사업비 유용 및 목적 외 사용 시 협약 해약 및 제재조치 진행

- 협약종료일 이후 최종평가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잔액 환수

○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추진절차	추진내용	일정
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	○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	~ 4. 28.
지원기업 선정평가, 지원대상자 결정	○ 1차 서류검토 ○ 2차 발표평가 (단, 3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 先진행 가능하며 평가 기준 및 선정기준은 공고 상 대면평가 기준과 동일)	5월초
협약체결 및 경기도 지원금 지급	○ 협약구비 서류* 확인 및 협약체결 * 이행(지급)보증보험, 매칭 확약서 등 ○ 협약체결일로부터 컨소시엄의 사업 착수 ○ 경기도 지원금 선지급(TP→참여기업)	5월중
사업추진	○ 협약체결일로부터 컨소시엄 사업 착수 ○ 기초지자체 매칭비 선지급(기초지자체→참여기업)	5월중
중간점검	○ 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보고서 접수 ○ 현장 점검 진행 (사안에 따라 수시 점검 가능)	9월중
최종보고서 접수	○ 사업기간 종료(11.21.)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접수	~11월 30일
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	○ 사업계획 대비 최종 수행결과 등에 대한 최종평가(발표평가) - 과제추진 결과, '성공/실패' 판정 ○ 사업비 정산을 통한 재월별(도, 기초지자체) 정산금 확정·통보	12월초
사후관리	○ 재월별 정산금 환수 ○ 상용화 현황 모니터링, 성공사례 발굴	12월말

IV 신청안내

- 신청기간 : 2025년 3월 27일(목) ~ 4월 28일(월) 23:59
- 신청방법 : 경기테크노파크 드론사업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접수
* (이메일 주소) ahnsh@gtp.or.kr,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드론사업 담당자
- 제출요령 : ‘기초지자체명_실증지원’ 으로 하여,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
* 예시) △△시(군)_실증지원.zip
* 직인, 서명 등이 날인되는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·제출 필수

□ 제출서류 : 아래 표의 제출서류는 공고일(3월 27일) 이후의 서류로 발급·작성하여 제출

연번	제출서류	제출여부	비고
1	신청서 및 계획서	필수	제공서식
2	사업자등록증명	필수	홈택스
2-1	공장등록증명	해당시	정부24
2-2	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	해당시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3	국세완납증명	필수	홈택스
4	지방세 납세증명서	필수	정부24
5	서약서	필수	제공서식
6	정보활용동의서	필수	제공서식
7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활용 동의서	필수	제공서식
8	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필수	제공서식
9	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여부 약약서	필수	제공서식
10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참여인력 확인용)	필수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11	최근2개년 재무제표(2023년, 2024년)	필수	홈택스
12	기초지자체 부담금 납부 약약서	필수	제공서식

V 주의사항

□ 지원제외 대상

- 2025년에 경기도외 타 시·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(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)
- 동일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과제 및 기관(정부, 자치단체, 조합, 단체, 정부 산하기관 등)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
-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
-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기간 중 부도, 법정관리, 휴·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
-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 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기업
-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
- 사업에 투입되는 기체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(본 공고문의 "V.주의사항"에 "사업 수행 기체 조건"참고)
- 신청인(컨소시엄)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(컨소시엄)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□ 사업 수행 기체 조건

- 「항공안전법」 제122조제1항에 따라 **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에 대해 기체 등록 신고가 완료된 기체**
 - 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24조제7호에 따라 연구기관 등이 시험·조사·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 기체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음
 - 영리 목적인 경우 무게 상관없이 모두 신고
- 「항공안전법」 제124조에 따라 **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은 기체**

□ 경기도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
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- 적용법률

↳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
↳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
↳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
↳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※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“[별첨]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” 참고

VI

문의처

□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드론사업 담당자 031)500-3159

경기도 고시 제2025-23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1. 17.
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2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3. 적용사업 :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음
나.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
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4) (자금·융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5) (시·군 보조(매칭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
 - 6) (소상공인 지원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7) (투자유치 사업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가. 적용법률
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 나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(사업별)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·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 조회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 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 나. 삭제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범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(서식2)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2, 2995)
- 붙임 1. (서식1)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2. (서식2)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
 3. (서식3) 이의 및 구제신청서